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15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 박상혁·한병도·김정호

김철민 • 윤후덕 • 김윤덕

이정문 · 서삼석 · 허 영

최인호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등록 업자의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한 폐 차 중개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 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 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 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를 "제79조제13호 · 제14호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u>제79조제13호</u> , 제	<u>제79</u> 조제13호 · 제14호
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	의2
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	
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	
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	
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	
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	
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